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항
의 결 연 월 일	2021. . . (제 회)	

건 설 산 업 기 본 법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노형욱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1. 의결주문

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건설현장 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일반화되면서, 건설사업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지 발주자가 관리하는 내용으로 「건설산업기본법」이 개정[법률 제18338호(2021. 7. 27 공포, 2022. 1. 28 시행)]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, 부실시공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허용 범위를 축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6조제1항제2호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“기술능력이 같은 종류·등급으로서”를 “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 중”으로 한다.

제25조제1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9. 건설기술인 투입계획

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3개”를 “2개”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3억원”을 “5억원”으로 한다.

제8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3조의3(공공건설공사의 외국인근로자 관리) 법 제87조의3제2항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외국인근로자를 적법하게 고용하는 지 확인에 필요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”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.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

1. 외국인근로자 고용현황에 관한 자료
2. 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

3.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자료

가. 「출입국관리법」 제18조 및 제21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과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근무처가 변경·추가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

나. 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 수료증 또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1조에 따른 기초 안전보건교육 이수증(건설 일용근로자에 한한다)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6조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, 제83조의3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공사도급계약의 내용 및 건설기술인 현장배치에 관한 적용례) 제25조제1항 및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(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)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 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6조 (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) ① 건설사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 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라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. 1. (생 략) 2. 기술능력: 보유하고 있는 업 종의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 과 추가로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·등급 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 여 1명(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 는 기술인력이 5명 이상인 경 우에는 2명)의 기술능력을 이 미 갖춘 것으로 인정. 다만, 건 설사업자가 가스난방공사업을	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 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6조 (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) ① 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추가로 등록[가스난방공사업
중 난방공사(제1종)을 주력분
야로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하
다]하려는 경우에는 기술능력
이 같은 종류·등급으로서 공
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
인력은 이미 갖춘 것으로 분
다.

② ~ ④ (생략)

⑤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
등록한 자가 같은 업종의 주력
분야를 추가로 등록하거나 전문
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
려는 자가 둘 이상의 주력분야
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기술능
력이 같은 종류·등급으로서 공
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
력 중 1명은 주력분야별로 이미
갖춘 것으로 본다. 다만, 가스난
방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주력분
야[난방공사(제1종)은 제외하
다]를 추가로 등록하거나 가스
난방공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
둘 이상의 주력분야[난방공사
(제1종)은 제외한다]를 등록하

----- 기술능력
에 해당하는 자 중 -----

-----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

-----.

려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이 같은
종류·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
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은 이미
갖춘 것으로 본다.

⑥ (생 략)

제25조(공사도급계약의 내용) ①
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
도급계약에 분명하게 적어야 할
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~ 18. (생 략)

<신 설>

제35조(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
준 등) ①·② (생 략)
③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
대해서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
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
승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인
을 3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
할 수 있다. 다만, 공사예정금액
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동일
한 종류의 공사로서 제1호 각
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
우에는 2개의 건설공사현장까
지 배치할 수 있다.

1.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의

----- 기술능력에 해당
하는 자 중 -----

-----.

⑥ (현행과 같음)

제25조(공사도급계약의 내용) ①-

-----.

1. ~ 18. (현행과 같음)

19. 건설기술인 투입계획

제35조(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
준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-----

-- 2개-----
----- <단서 삭제>

1. ----- 5억원 -----

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다음
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
는 공사

가.·나. (생 략)

2. (생 략)

④ 삭 제

⑤ (생 략)

<신 설>

가.·나. (현행과 같음)

2. (현행과 같음)

⑤ (현행과 같음)

제83조의3(공공건설공사의 외국

인근로자 관리) 법 제87조의3제
2항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
인이 외국인근로자를 적법하게
고용하는 지 확인에 필요한 “대
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”란 다
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. 이
경우 외국인근로자를 추가로 고
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

1. 외국인근로자 고용현황에 관
한 자료

2. 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
관한 법률」 제8조 또는 제12
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
허가서 또는 특례고용가능확
인서

3.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
다음 각 목의 자료

가. 「출입국관리법」 제18조

	<u>및 제21조에 따라 취업활동할 수 있는 체류자격과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근무처가 변경·추가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</u> <u>나. 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 수료증 또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1조에 따른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(건설일용근로자에 한한다)</u>
--	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3514